

인천지방법원 2018. 12. 13 선고 2018가단26078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11. 29.

판결 선고 2018. 12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1985. 10. 5. 접수 제1607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오창훈

별지